

정오표

작성일자 : 2022년 12월 15일

주거복지사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페이지	번호	정오 내용
282	3)	<표9-2>. 공용부분 - 계량기 *(2022년 현재 공용부분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계량기는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287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시행규칙 제30조)

주거복지사 실력다지기 기본문제집		
페이지	번호	정오 내용
039	064	ㄷ. 물리적 서비스는 주택기획, 리모델링, 임대주택공급 등이 해당된다.
048	082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은 월 300만원을 번다. 이 가족은 월세로 매달 1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없다.
051	090	정답 ㉔ → 정답 없음
055	099	해설 소득대비주택가격(PIR)은 연소득에서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주택가격/연소득] X 100)으로
065	120	해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어떤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29	262	해설 ④ 천연가스이나 현재 사용연료 중 발열량이 높고 무공해성으로 우수한 연료이다.
133	271	답 ①, ②(복수정답)
154	330	②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과 수립대 등의 방음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184		정답 396 ① 397 ④
185	398	정답 398 ③
187	402	해설 ④ 신희부부란 혼인한 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한다. ③ 2019년 노인가구는 9.1년, 소득 하위 가구는 7.7년으로 일반가구 6.9년에 비해 주택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	429	③ 임대기간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6년 이다.
238	7	⑤ 비상구설치 및 잠금장치내부설치에 대해서는 요구도 보다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332	220	⑤ 관찰학습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결과 가 나올 때 의사소통기술, 갈등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
374	320	④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개선 시행 후 대상자 만족도 평가는 사업 참여자원봉사자 및 연계 기관관계자, 서비스 수혜대상자, 이웃 주민으로 나눠서 실시해야 한다.
396	366	문제 수정 다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하는 최소 단지규모는 얼마인가?
411	398	정답 ㉔ → 정답 없음
449	480	정답 ㉔ → 정답 없음
457	494	해설 Saving(절약) 단열 보강 등 에너지 절약, 관리비용 절감, 공간활용 등

주거복지사 모의고사		
페이지	번호	정오 내용
020	030	정답 ㉔ → ㉑
032	023	다음에서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 자격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조건과,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043	032	㉔ ㉔, ㉔, ㉔ → ㉔ ㉔, ㉔, ㉔
047	023	정답 ㉔ → ㉒
051	032	· 서울시 등 특, 광, 시, 도의 관리규약 준칙에는 수도계량기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관리 시설 로 되어 있습니다. · ㉔ 외기에 면한 ~ 발코니 ~ 해당된다.
072	035	㉔ 46, ㉔ 3, ㉔ 18
106	008	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가 아닐 것
121	008	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가 아닐 것

주거복지사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페이지	번호	정오 내용
280	3)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소형 주택도 포함된다.
282	3)	<표9-2>. 공용부분 - 계량기 *(2022년 현재 공용부분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계량기는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287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시행규칙 제30조)

주거복지사 주택관리기술		
페이지	번호	정오 내용
6	2.	(1) 단독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㉔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 ㉔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7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주거복지개론

페이지	번호	정오 내용
17	2)	<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비교 다중주택-규모 330㎡ 이하 → 660㎡ 이하
24	①	건축법 시행령 2021. 12. 30. 기준 → 건축법 시행령 2022. 08. 04. 기준
24	②	공동주택에 주택법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원룸형주택 포함, 건축법 시행령 2021. 12. 30. 시행기준 → 공동주택에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 포함, 건축법 시행령 2022. 08. 04. 시행기준 •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30		1. 소형 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주거복지사 공동주택과 디자인

페이지	번호	정오 내용
17	2)	<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비교 다중주택-규모 330㎡ 이하 → 660㎡ 이하

주거복지사 주거관리행정

페이지	번호	정오 내용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3-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자격(일반공급)

분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
1순위	<p>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p> <p>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p>다.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p> <p>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무주택자 기준 예외)</p> <p>마. 북한이탈주민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바. 등록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자(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으로 한정)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p> <p>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무주택자 기준 예외)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p>
2순위	<p>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p> <p>카. 가목~라목의 기준에 준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타. 등록장애인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표 3-6〉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구 분	입주자격	선정기준
공통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	-
가. 전용면적 50㎡ 미만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2명인 경우 60%) 이하인 자(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 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2) 제2순위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연접 시·군·자치구 거주자 (3) 제3순위 : 그 외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 2명인 경우 80%) 이하인 자(단독세대주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그 외
다.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 이하인 자(단독세대주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그 외